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 74
----------	--------

제출년월일 : 2014. 9.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적경제기업 정의(안 제2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관련 서울시 조례, 우리 구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안전행정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나.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4조)

-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구의회사무국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범위 구체화(안 제6조 ~ 제7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 수립·공고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 작성

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안 제9조)

- 지역사회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평가한 사항을 반영한 우선구매 선정기준을 마련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사항 규정(안 제10조)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지속적 불만, 재고 부족, 긴급한 수요 발생 등 우선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사유를 명시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안 제13조)

-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를 요청
-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4. 6. 26. ~ 7. 16

- 제출의견 : 1건(마포 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 제출의견 일부반영
 - 사회적경제기업범위 자활기업 포함 : 반영
 - 기타 임의규정 강행규정화 등 : 미반영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평가조문 :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
- 개선방향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업무처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공고 명시

권고안	조치사항
<p>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p>1. ~ 5. (구청장 방침과 같음)</p> <p>② (구청장 방침과 같음)</p>	<p>· 미반영</p> <p>- 실적 공고가 바로 업무처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로 연계되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제6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조항에 의거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됨</p>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 원안 동의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4. 8. 26) : 수정의결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안전행정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구매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공되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3.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6.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7.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

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의견제출 단체	제출의견(요약)	검토의견
마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포함 (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반영 여부 : 일부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일치하는 사회적경제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음. - 또한, 최근 제정된(2014.3.20)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본 조례 역시 자활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기타 의견 제시한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아직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보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사회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적당치 않음 - 따라서,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에 포함하되, 기타 장애인 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10조제1항제7호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로 두고 있는 조항 중 7호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반영 여부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10조제1항제7호에 열거한 기업들은 개별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므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로 두는 것이 타당함

의견제출 단체	제출의견(요약)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제품구매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제품의 정보제공과 구매촉진, 판로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반영 여부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은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 할 때 예산의 이중 투입이 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검토중에 있으며, 센터를 건립하면 본 역할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건립 확정 추진 시에 조례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제1항 및 제13조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반영 여부 :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모든 법 조항을 강행규정화하기는 무리가 있고, 본 조례의 제정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때 조례의 강행규정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실효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13조 2항의 경우, 관내기업 등과의 협약은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체결 가능한 사항으로, 마포구청의 의지만으로 진행할 수 없고, 제13조 3항의 경비 지원, 행정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매년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의 분배문제, 예산 확보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임의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의결)

- 안 제2조제1호사목을 삭제한다.
- 안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 수정대비표 -

상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 바. (생략) 사. <u>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u> 2. ~ 3. (생략)	제2조(정의) ----- ----- 1. ----- ----- ----- 가. ~ 바. (상정안과 같음) <삭 제> 2. ~ 3. (상정안과 같음)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u>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 ----- ② (상정안과 같음)